

# 저임금근로자 특성과 변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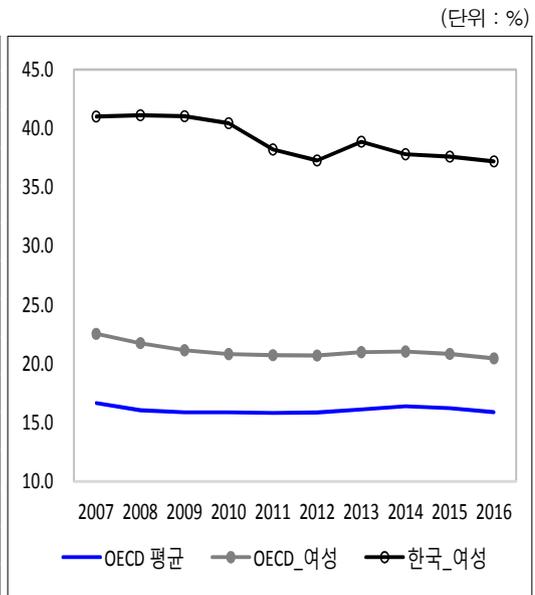
○ 2016년 OECD 회원국(2018년 6월 발표 기준)의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는 15.9%이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가 넘는 상위국가군에는 미국(24.9%), 한국(23.5%), 캐나다(22.3%), 체코(20.3%) 등이 있음.<sup>2)</sup>

〈표 1〉 OECD 회원국의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16년)

(단위 : %)

	전체	여성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15.7	19.6	13.5
캐나다	22.3	20.8	22.8
체코	20.3	25.4	16.2
독일	18.9	26.5	14.8
그리스	15.8	17.8	14.3
헝가리	19.6	21.1	18.1
한국	23.5	37.2	15.3
멕시코	16.1	21.7	13.3
뉴질랜드	11.2	13.2	9.6
포르투갈	11.4	13.4	9.3
슬로바키아	19.0	22.0	16.0
영국	19.3	25.9	14.9
미국	24.9	29.5	21.3
OECD 평균	15.9	20.4	12.8

〈그림 1〉 한국과 OECD 저임금 비중(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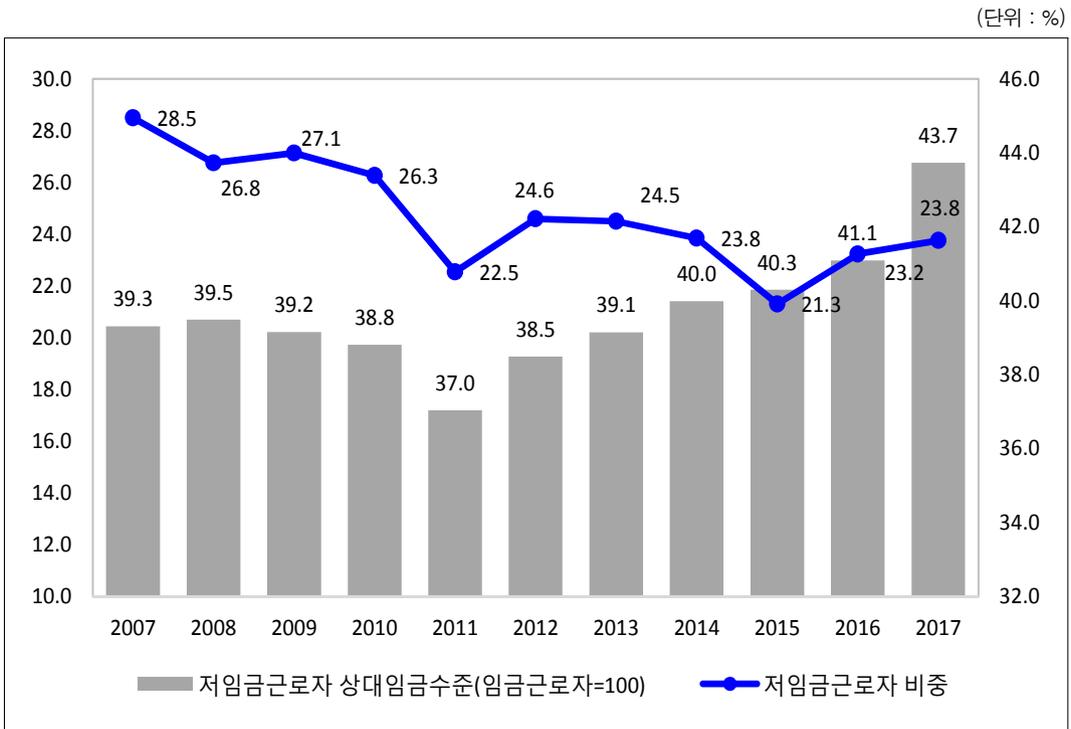


주 :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정규직(full-time regular) 기준임.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2018년 6월 기준).

- 1)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함.
- 2)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저임금 근로 비중을 보면 미국, 한국, 캐나다, 체코는 물론 아일랜드(25.1%), 이스라엘(27.4%), 포르투갈(20.3%), 슬로바키아(20.0%), 폴란드(22.6%), 영국(20.4%) 등에서도 저임금 근로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

- 여성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37.2%로 남성(15.3%)에 비해 월등히 높음. 2000년대 초반 40%대 중반이었던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1년 30%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이후 2016년 현재 37.2%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저임금근로자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함.
  - 2017년 8월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8%로 전대비 0.6%p 증가함.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21.3%)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함.
  - 특히 여성과 20세 미만 청년층, 인구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34.0%로 남성(15.7%)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

[그림 2]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상대임금 수준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숙박업(65.2%), 도소매업(42.5%), 사업시설 및 지원 서비스업(40.9%) 부문에서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으며, 여성의 고용을 이끌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31.2%로 나타남.
  - 2016년 8월에는 임금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269천 명 증가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가 251천 명 증가했으며, 2017년에도 시간제 근로의 증가폭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용 증가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런 시간제 일자리의 10개 중 7개가 여성의 일자리이며, 시간제 근로의 60%가 저임금 근로임.
  - 여성 시간제 근로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여성 시간제 저임금 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시간당 임금 기준)은 2017년 현재 전년동월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임(43.7%).
- 청년층, 65세 이상 고령층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도 각각 42.5%, 37.9%로 낮은 수준임.
  -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 외에도 국민연금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도 낮은 수준임.

〈표 2〉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8월)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민연금 가입률	37.9 (29.3)	32.4 (25.2)	35.3 (27.2)	36.2 (27.4)	36.6 (27.7)	34.6 (24.4)	37.4 (27.2)	41.1 (31.4)
건강보험 가입률	64.9 (34.4)	61.7 (31.9)	63.5 (34.6)	63.7 (35.0)	63.8 (34.3)	60.5 (33.3)	63.3 (36.7)	64.5 (41.0)
고용보험 가입률	32.7	29.8	32.0	33.0	33.9	31.8	35.7	39.4

주 :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가입자만을 고려했으며, ( ) 안은 직장가입자 비율임.

2) 고용보험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